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 10. 17 선고 2023가단4470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4. 9. 26.

판 결 선 고 2024. 10. 17.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D과 피고 사이에 경남 산청군 E 전 843㎡ 중 1/6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0. 4. 8.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취소하고,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2020. 6. 1. 접수 제695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가. D은 2021. 2. 15. F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5,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연 24%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21. 6. 22.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고, 2022. 4. 26. D에게 채권양도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즈음 위 내용증명우편이 D에게 도달하였으며, 2022. 5. 11. 현재 이 사건 대여금은 원금 4,879,106원, 미수이자 535,765원, 연체이자 109,078원이다.

다. G의 모인 망 H이 2020. 4. 8. 사망하자, D은 당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약정을 취소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약정 체결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약정 체결 당시 D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이 D의 유일한 재산이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이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동